

학 | 술 | 세 | 미 | 나

## 우리 나라의 경제특별구 평가 및 발전전략

---

2003년 2월 21일(금) 오후 13시 30분

---

크라운프라자제주호텔

---

**주최 :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후원 : 제주도**

## 세 미 나 일 정

- 등 록 : 13:30~14:00
  
- 개회식 : 14:00~14:20
  - 개 회 사 : 고충석 / 제주발전연구원장
  - 인사말씀 : 윤건영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장
  - 축 사 : 우근민 / 제주도지사
  
- 제1주제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평가와 발전방안 (14:20~15:20)
  - 사 회 : 고충석 / 제주발전연구원장
  - 발 표 : 좌승희 / 한국경제연구원장·국제자유도시포럼 공동의장
  - 토 론 : 김부찬 /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현진권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평가 (15:30~16:30)
  - 사 회 : 나성린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 표 : 이왕기 /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 론 : 김형수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제3주제 : 경제특구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진로 (16:40~17:40)
  - 사 회 : 구정모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 표 : 김정훈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김성태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허향진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만 찬 : 18:00~19:30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도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제발표를 흔쾌히 승낙하시고 옥고를 작성해 주신 좌승희 원장님, 이왕기 박사님, 김정훈 박사님, 그리고 사회와 토론을 해주실 참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공동 개최를 허락해 주신 윤건영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장과 회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21세기는 경쟁과 변혁의 시대입니다. 이미 세계는 하나의 경제지구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념적 대립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권은 유럽경제권, 북미경제권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변방이었던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위상 변화 속에서 동북아의 각국은 유동적인 국제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별구' 전략 등 다양한 투자유인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도 제정하였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도 경제자유지역과 더불어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앞당기는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은 세계화를 수용한 발전전략입니다. 2001년 12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제주개발은 지역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관점

에서 새롭게 재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인 관광객 450만명 유치, 골프장입장료 인하에 따른 골프관광객 증가, 내국인면세점 개점으로 쇼핑관광의 활성화, 1조 300억원의 투자의사 표명 등 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정된 '경제자유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보다 비교 우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의 핵심권역에서 배제되어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주만의 특화된 경쟁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특별구역 양자는 상호 대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간의 Win-Win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호간의 특화된 전략과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그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 아래 저희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포함한 우리 나라의 '경제특별구' 전략을 평가해 보고 이를 토대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특별구 평가와 발전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뿐만 아니라 경제특별구 전략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토론 참여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제주도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21일

제주발전연구원장 고 충 석

##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경제특별구’

경제특구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1년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 올해에는 인천, 부산, 광양 지역 등을 경제특구로 설정하여 외자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특구의 지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과 세제혜택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특구의 전통적인 역할은 수출촉진과 외자유치이었지만 최근에 논의되는 경제특구는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지방분권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특구의 이러한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재정학자들과 경제특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정책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시어 경제특구와 재정정책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03년 2월 21일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 윤 건 영

## 축 사

#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의 도약

오늘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특별구 평가와 발전전략 모색」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열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한국의 '동북아 중심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세기 동북아시대는 우리 한국과 제주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기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의 등장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제조업과 1차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반면, 관광, 컨벤션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정부가 구상하는 동북아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관광·휴양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체질을 개방적으로 변모시키고,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경영·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치 시범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러한 구상과 4년여의 노력 끝에

도민과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산물이자, 국내 경제특구의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국인면세점, 골프장입장료 인하 등의 새로운 제도에 힘입어 지난해 관광객 수는 사상최고인 45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쇼핑아웃렛, 휴양형주거단지 등 7대 선도프로젝트 개발에 본격 착수하여 내·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앞으로 외국의 선발 자유도시들과 국내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법제도 분석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서 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개방과 포용을 통해 과거 유배와 변방의 역사에서 21세기 신문명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미나 개최에 적극 협력해 주신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와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쓰신 제주발전연구원 고충석 원장님,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윤건영 학회장님, 그리고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해주실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세미나가 알찬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2003년 2월 21일

제주도지사 우 근 민

## 주 제 발 표

### 우리 나라의 경제특별구 평가 및 발전전략

제1주제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평가와 발전방안

좌승희 / 한국경제연구원장·국제자유도시포럼 공동의장

제2주제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평가

이왕기 /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주제 : 경제특구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진로

김정훈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평가와 발전방안

## 좌 승 회

(한국경제연구원장 · 국제자유도시포럼 공동의장)

### 목 차

- I. 서론 : 문제제기
- II.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내용
- III.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
- IV.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안
- V. 맺음말

## I. 서론 : 문제제기

- 20세기 제주는 보호주의 울타리 속에서 관광과 감귤의 양대 산업을 발전 축으로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왔으나 최근 경쟁력 약화에 직면함.
  - 관광산업은 해외여행 자유화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치열한 관광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국내관광지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할 처지에 놓임.
  - 감귤산업도 WTO 등장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와 더불어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한 상태임.

- 제주는 경쟁과 변혁의 시대에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음. 우리 나라의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한 축이 되느냐 변방의 섬으로서 전국 1%의 수준에 머물 것인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
  - 기존의 사고와 발전전략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
- 제주는 2002년부터 세계화, 개방화를 수용한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2001년 12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 6개월이라는 짧은 법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골프장 입장료 인하, 내국인면세점 개점 등으로 내도 관광객이 사상 최고인 450만명을 돌파하는 등 하나둘씩 국제자유도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비교하여 보다 진향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한 제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의 핵심권역에서 배제되어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 이에 본 논문은 그 동안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성과를 점검해보고 이를 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 II.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주요내용

### 1. 개발비전

-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 친화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개발
  - 휴양주거·복합레저단지, 관광항, 테마공원 등 관광시설 확충
  - 쇼핑아울렛, 내국인 면세점, 컨벤션시설 등 관광수요 창출
  - 골프장 입장료 인하, 휴양펜션업 활성화 등 관광비용 인하
-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로 발전
  - 투자진흥지구 지정, 출입국 원활화, 영어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내·외투자 유치
  - 과학기술단지 조성(BT·IT,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첨단지식산업 육성

- 자유무역지역 설치, 국제금융기반 조성을 통해 물류·금융 활성화
  - 제주도민의 소득 향상과 국제화의 선도기능 함양
    - 직업훈련·능력개발 강화, 도민고용업체 지원으로 도민의 고용 촉진
    - 창업지원, 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도민소득 향상
    - 전문·외국어교육 강화, 외국대학분교 유치를 통해 국제화능력 함양
- ⇒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

## 2. 주요 내용

- 정부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제주도를 환경 친화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세움.
- 관련제도 개선 및 내·외국인 투자여건 조성과 함께, 이와 병행하여 제주도민의 소득 향상과 국제화의 선도기능을 함양하는 시책도 강구함.

### 1)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

- 외국인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외국인의 원활한 출·입국을 위해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점차 확대하고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본토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체류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
  - 외국어교육·생명공학·정보통신·관광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전문인력에 대해서 1회 체류상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종합휴양업·관광호텔업·관광공연장업 투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총사업비가 1천만불~3천만불 이상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

면하고, 농지조성비·대체조립비 등 부담금도 50% 감면함.

- 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 보조금 등을 지원함.
  
-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특례
  - 제주도의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제주도내 설치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조세지원을 강화함.
  - 외국인투자기업뿐만 아니라 내국인투자기업도 입주를 허용하고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의 기업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줌.
  -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법인·소득세·지방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내국인에 대해서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도입
  - 제주도에 생물·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세제를 지원함.(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추가로 감면하고 연구기자재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하기로 함.
  
- 영어서비스 및 영어교육 강화
  -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내 행정기관에서는 외국어 공문서를 접수·제공하도록 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주도민에 대한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추진함.
  
-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 제주도에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외국법인도 대학원, 대학 등 외국대학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학 설립과 운영상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함.
  - 또한 외국인도 초·중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5

년 이상 해외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3년 이상으로 완화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주도에 특별 지원함.
- 금융·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외국은행을 유치하고 국내 선도은행을 육성하며, 국제금융전문인력 확보 및 금융기법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함.
  - 제주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시설을 수요에 맞추어 확충시켜 나가면서 국제물류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선박등록특구제도를 도입함.

## 2) 내·외국인 관광유인책의 강화

- 「내국인 면세쇼핑」 제도 도입
  -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관광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로 가져나가는 물품에 대해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의 세금을 면제함.
  - 다만 보따리상 출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제대상품목, 구입한도액을 제한하기로 함.
- 골프장 건설 확대 및 입장료 인하
  - 국내·외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확대(운영중 8개, 건설추진중 19개)하는 한편,
  - 골프장입장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골프장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및 체육진흥기금·관광진흥부가금을 면제하고 골프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중과제도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며 각종 부담금도 감면함.
- 저비용 관광을 위한 노력 강화
  -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휴양펜션업 활성화
  - 관광업계의 경영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적극 유도·지원

- 관광객 유치 과당경쟁 억제 등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

3) 7대 선도프로젝트의 추진

- 제도개선 대책과 병행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촉매역할을 담당할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함.
- 7대 선도프로젝트는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5735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2284억원 △서귀포 관광미항개발 923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4255억원 △제주 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4255억원 △쇼핑아울렛 조성 426억원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1500억원으로 총 1조7345억원(공공 4791억원, 민자 1조2554억원)을 투입함.
- 기본적으로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되, 종합개발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기로 함.
- 선도프로젝트는 외국인투자 가능성, 국제적 수요 등에 대한 세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임.

4)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공항, 항만, 도로, 통신·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 제주공항의 처리능력 대폭 확충, 제주항을 중추항만으로 육성, 2011년까지 총 658km의 도로신설 및 확장, 200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 완료, 광역상수도 공급능력 확충,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함.
- 2010년까지 2조 9천여억원을 투자함.

### Ⅲ.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

####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

- 2002년중 내도관광객이 사상최고치인 450만명을 초과함(97년 436만명 이후 최고)
  - 특히, 중국정부(공안부)에서 2002년 9월 4일(중국여유국은 작성, 자치구, 직할시에 10월 28일 공문시행)부터 제주지역에 한해 중국관광객의 무사증출국을 허용함.
- 골프장 입장료 인하(2002년 4월 20일 이후)로 골프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음.
  - 골프장입장료가 인하된 4월 20일 이후 12월말까지 골프관광객은 28% 증가하였으며(520,262명('02) ← 405,881명('01)), 지방세 및 농지조성비 등 감면으로 골프장 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어 현재 9개 골프장 외에 사업준비중인 21개 골프장이 모두 개장하면 골프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내국인면세점이 개점되어(2002년 12월 24일) 제주관광의 발전기반을 마련함.
  - 제주의 면세쇼핑이 활성화되면 연간 600만명에 달하는 해외여행객이 지출하는 70억달러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고 관광객은 현재 450만명에서 2011년 940만명으로 확대됨.
  - 공항, 항만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국인면세점의 하루 매출액은 2억8천만원 정도로서 연간 총매출액은 1천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내국인면세점 운영요원 130명 중 면세점 운영전문가 2명을 제외한 128명 모두 제주도출신로 채용함.
-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별법 시행이후 불과 6개월만에 1조 300억원의 투자의사가 표명되어 이미 4개업체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하였고, 3개업체는 개발사업예정자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선박등록특구 지정을 통해 371척의 국제선박이 등록을 완료(2002년 12월 17일 현재)하였으며 제주(JEJU)를 표기한 국제선박이 5대양을 누비면서 제주를 홍보하고 있음.
-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기본타당성 용역이 시행 중(2002년 3월~2003년 7월)에 있으며, 이미 3건은 용역이 완료됨.(중문관광단지 활성화, 자유무역지역, 쇼핑아울렛)

#### IV.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안

##### 1. 제도적 보완 : 특별법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법 수준의 제도 보완

-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경제특별구법상 혹은 타국가의 자유도시보다 우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투자, 무역, 외환 및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공급, 조세부담 및 각종 행정절차의 완화 등 경제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자유화 조치가 필요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투자자가 자국에서처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도내에서 대외지급수단으로 달러, 엔, 유로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외국통화 사용 한도를 상향시키고 외국인 전용병원·약국설치와 관련해서도 경제자유구역법 수준으로 개정, 도내 휴양형 거주단지 등에 도입되는 요양시설 등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 특례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외국 투자자와 관광객이 편의 증진 및 제주도민의 개방적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방송 송출 채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임.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해외거주 3년 이상에서 완전 폐지’로 전환해야 함.
- 인터넷의 전세계적인 사용 확산으로 모든 경제부문에서 영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상당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제주지역의 외국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어사용에 대한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실용영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외국의 우수 대학 및 민간운영업체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제주의 제 2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무역 및 무역외 거래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외환·금융거래를 보장함.
  - 어느 통화로도 지불, 송금, 자본거래를 허용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과실송금을 허용함.
- 국제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활용을 보장하여야 함.
  - 외국 노동력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관계,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 국제적 관례를 적용하도록 함.

- 기업활동에 대해 조세부담을 국내 경쟁지역 혹은 경쟁국가 보다 더욱 우월한 조건을 갖추어 일종의 조세천국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토지개발 공급 및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배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토지 경우, 사업자가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대행함.

## 2) 현행 특별법 시행상의 보완과제

-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은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과 2천만달러 이상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산업,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실버타운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공익에 반하는 사업, 경제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업,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사업 등 극소수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안업종을 폐지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 투자를 허용하고 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홍콩은 사회안정과 우편, 철도, 수도 등의 공공사업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음.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관련규정 강화 및 미비점을 보완함.
- 인허가 절차 처리를 간소화함. (국토이용계획 변경기간 단축 등)
  - 국토이용계획 변경기간 단축, 환경성검토 특례 등

## 2. 관광·휴양기능 차별화를 위한 과제

- 관광·휴양기능 확대를 위한 관광시설·서비스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각종 부담금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
- 카지노 사전허가제 도입, 기존 카지노시설 규모화, 휴양펜션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함.
-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함. (출입국시 1만달러이상 신고사항을 → 1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
- 관광지 등 도로표지판 기능 명확화(영문표기 등)

### 3.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의 발굴

- 제주도만의 비교우위가 높은 부문에 대한 집중 개발을 위해 현재의 7대 선도프로젝트 이외에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투자상담이 늘어나는 등 잠재적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투자유치활동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따라서 잠재 투자가에 대한 상담과 투자설명회를 보다 적극화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 잠재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사업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함.

### 4. 해외홍보, 마케팅 활동 강화

- 제주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함
- 홍콩, 빈, 라스베이거스, 하와이와 같이 그 도시에서 연상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IR개발 및 홍보
- 2005년 APEC 정상회담의 제주도 유치 노력
- 정상회담은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됨.
- 국제자유도시포럼에서는 이를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 제주도와 협력하에 적극 추진하고 있음.

### 5.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보완과제

-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 전개
- 도민들의 국제자유도시와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지역단위의 대화활동을 전개함.
- 소규모 도민자본 참여시 인센티브를 지원함 (현행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추가,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지원 검토)
- 1차산업 등 지역산업의 육성
- 1차산업 고품질 브랜드화, 1차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을 감면함.

- 먹거리 개발 등 1차산업과 관광산업, BT(생명공학) 등과 연계하여 발전시킴.
- 지역내 영세사업장을 규모화하고, 자체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6.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체제의 정비

- 제주도과 개발센터간의 역할분담 등 추진체제의 재정비
  - 지금까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주체가 불명확하고 추진기구간의 합리적 협력관계가 부재하다는 시각도 있음.
  - 센터이사장의 현지 지자체와의 업무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상호 의견교환과 이해증진을 위한 업무체계를 정립함.
- 민자유치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 민자유치를 위한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할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

## 7. 인적자원의 육성

- 제도적 장치와 물리적 시설이 완비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인적자원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임.
  -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전문관광안내인이 육성되어야 하며 국제업무에 능한 변호사, 회계사 등 국제전문인력도 유치하고 이를 육성함.
  - 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산전문가를 대규모로 육성함.
  -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함.

## V. 맺음말

- 제주도가 지역 나름대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임.
  - 국가가 제주지역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적 관점에서만 인식한다면 이는 제주의

- 불이익 차원을 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임.
- 따라서 국가는 경제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 제주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을 동시에 연계·달성할 수 있는 Win-Win적 시각을 가져야 함.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충실해야 함.
  - 모든 것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도내에 축적된 자본도 없고 노하우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는 과욕임.
  - 지역 실정에 맞게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싱가포르가 물류중심, 홍콩이 금융중심,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물류·제조업중심인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관광·휴양·비즈니스 중심으로 차별화하여 추진함.
  - 제주를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추진되어야 함.
- 국제자유도시는 일정 수준의 자율적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긴요함.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
  - 특히 관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함.
  -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등을 과감하게 제주도에 이양하고, 경제문제에 있어 준자치적인 성격으로 제주도 지자체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부록 1>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추진기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직속 행정기구에서 지자체업무와 경제자유구역업무를 종합적 수행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본 성격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지원 복합형 지역 개발구
지정지역	인천공항주변지역과 부산·광양항	제주도
적용대상	외국인	내·외국인
외국인투자세제 지원대상	①제조업 : 1천만 불 이상, 고용규모 100명 이상 ②물류업 : 1천만 불 이상의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 단지, 항만시설 운영업 및 관세자유지역 등록사업 ③관광업 : 1천만 불 이상의 관광 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국제회의시설, 종합유원시설,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① 관광업: 투자 금액 2000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종합휴양업과 국제회의 시설업, 투자금액 1천만 불 이상의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및 관광공연장업 그리고, 한국전통 호텔업과 종합 유원시설업 ②제조업: 총 사업비 1천만 불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③물류업: 총 사업비 1천만 불 이상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④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은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외국인투자세제 지원	①소득세·법인세는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②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등 지방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③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수입 2년간 관세 면제.	①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②지방세: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감면. ③관세: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의 3년 이내 수입 물품,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
	외국인에 대해 지원	내·외국인에 대해 지원

우리 나라의 경제특별구 평가 및 발전전략

구분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규제완화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강제취업규정,</li> <li>②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하에 勤勞者派遣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연장.</li> <li>③固有業種分野에 대한 大企業者 등의 참여 제한</li> <li>④국·공유재산 임대기간(3년)</li> <li>⑤월차유급휴가 규정</li> <li>⑥수도권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공업지역의 지정 등)</li> </ul>	규정없음
금융·외환	대외지급수단 경상거래 확대	규정 없음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지원 (기타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국유 재산에 建物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달리 적용</li> <li>②임대 공장 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노력을 위하여 그 소요 자금을 지원</li> <li>③임대용지의 염가 제공</li> <li>④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승인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 가능</li> <li>⑤도로, 용수 등 우선 설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국·공유 토지 혹은 공장 등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 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li> <li>②국·공유지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인하</li> <li>③국·공유지 임대내에 있어 첨단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매각 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 허가</li> <li>④국·공유지의 임대는 최장 50년까지로서 갱신이 가능하며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li> <li>⑤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의 토지 임대료 감면과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li> </ul>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외국어 서비스 제공</li> <li>②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li> <li>③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 확대</li> <li>④외국인 주거 단지 조성</li> </ul>	①외국어 서비스 제공

구분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내용
교육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자격 제한폐지 (외국거주 5년→삭제) * 전국 : 교육부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현재 5년거주 요건을 제주와 같이 3년으로 완화예정	내국인입학자격 제한 완화 (5→3년)
	원어민교사		원어민교사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자율학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교사, 외국어수업, 자율적 교과과정 등을 영위하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국제고는 현행 자율학교 형태로 지정 가능하나, 경제특구는 제주도의 규정보다 수업, 교과과정, 외국인학생입학 등의 예외가 추가로 허용됨 * 다만, 제주도는 자율학교지정 권한 이양 (교육부장관→교육감)
	교육재정 지원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국가의 교육재정지원 확대
	대학설립·운영	외국대학 설립과 관련, 별도의 법률 제정 예정	외국대학 설립과 관련, 별도의 법률 제정예정

<부록 2> 『경제자유구역법』 상의 특혜사항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 인·허가 예외적용

-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향만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소하천정비법,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34개 법률에 대한 예외적용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7개 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 세제 및 자금지원

-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부지조성비, 토지임대료 등의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의료시설·교육시설, 주택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법률의 예외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예외적용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예외적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예외적용



- 근로기준법 상의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에 대한 예외인정
- 전문업종에 한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예외를 인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국유재산법의 예외를 인정받아 국·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 안에서 임대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제19조에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 외국어 서비스

-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

— 외국환거래

- 대통령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서 외환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음

— 외국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의 예외를 인정받는 국제고등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함

— 의료기관 및 약국

- 외국인 전용의료 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약사의 취업을 허용함

<부록 3>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요

항목 \ 도시	홍콩	싱가포르	상해푸둥	신의주특구	경제특구	제주도
인구(만명)	689	353	160	34(기존인구)	625	53
면적 (km <sup>2</sup> )	1,096	648	522	67(기존신의주내)	인천, 부산, 광양항 인근	1,846
언어	영어,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등	중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1인당GDP (달러)	24,714	23,538	6,000	NR	9,400	7,200
법제정시기	90. 홍콩특구기본법	61. 경제개발청법	90. 외교교보세관리규칙	02.9. 신의주특구법	02.11. 경제자유구역법	01.12.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의 주요특징	97. 반환후 50년간 특별행정구 지위부여할 것을 미리 규정  (금융중심)	경제개발청의 권한(세제인센티브)규정  (물류중심)	상해푸둥의 대표적인 개발구 관련법  (금융·무역중심)	50년간 입법·사법·행정권 보장  (경공업 중심)	국제공·항만 주변 개발로 외자유치  (물류·제조업 중심)	내·외국인투자 유치목적 *무사증시행확대, 내국인면세점, 골프장입장료 인하 등 국내외 차별적제도시행 (관광·휴양중심)
외자유치	\$ 935억 유치	NR	\$ 350억 유치	NR	NR	NR
다국적기업 (외자기업)	855개 다국적기업	850개 다국적기업	40개 다국적기업 (6,600개 외자기업)	NR	NR	NR
법인세율	최고 16%	최고 24.5%	15% (중국타지역은 30%)	14%	최고 27% (1억원 이상영업소득)	최고 27% (1억원 이상영업소득)
개인소득세율	16.5 %	2~26%			최고 36% (8천만원 이상소득)	최고 36% (8천만원 이상소득)
투자인센티브	별도없음 (법인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	신규투자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최대 3-5년간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별도없음 (법인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	1천만불 이상 제조·물류·관광 관련 외국인투자에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1천만불 이상 관광관련 내·외국인투자에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첨단산업은 과학단지 입주시 5년간 감면
외국인학교	62개 (입학자격제한없음)	27개 (입학자격제한없음)	9개 (입학자격제한없음)	-	- (입학자격제한없음)	입학자격 제한 (해외거주 3년)

# 경제특구와 인천경제

허 동 훈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왕 기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I. 경제특구의 필요성
- II. 경제특구 계획의 추진경과
- III.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내용
- IV. 경제특구와 관련된 쟁점들
- V. 인천지역의 경제특구 조성계획(안)
- VI. 경제특구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

## I. 경제특구의 필요성

### 1. 경제특구의 개념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제도를 특정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경제특구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자유수출지역(Free Export Zone),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는데 중국이 개방전략을 채택한 이후 국제적 용어로 정착하였다(삼성경제 연구소, 2002).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세자유지역 제도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도도 광의의 경제특구라고 할 수 있지만 각기 제조업이나 물류업, 관광휴양산업에 대한 규제와 혜택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 2002년 들어 정부가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한 「경제특구」에 비해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이 바뀐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대상업종이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포괄적이며, 특히 외국인의 정주여건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다르다. 물론 경제특구의 대상 업종이 포괄적이긴 하지만 물류 및 비즈니스 즉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 2. 주변 동북아국가와의 경쟁

정부는 200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나섰다. 경제특구조성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정부가 밝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의 추진 배경에서 경제특구 조성의 필요성을 읽을 수 있다.

정부의 안(案)은 “동북아지역이 EU 및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하여 동북아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최적지로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 내에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주변국가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앞서 나가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너트크래커 현상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 부즈, 엘런 & 해밀턴 한국보고서의 경고를 반영하고 있다.

즉 서두르지 않으면 주변국가와 경쟁에서 패배하여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이므로 경제특구를 조성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 및 비즈니스 분야는 집적의 경제가 중요하고 특히 물류는 선점효과가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 건설의 시급성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트크래커 이론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기업간의 경쟁 또는 서로 다른 국

가의 동종 산업간의 경쟁은 국가간의 경쟁과 궤를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교우위를 지니는 산업을 갖게 마련이며 이웃국가의 성장은 자국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성장단계에서 보면 앞서간 일본과 추격해 오고 있는 중국사이에 있지만 이 두 나라와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 명암은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일본의 불황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는지 의문이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최근의 미국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을 떠 받히는 요인이 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보면 산업구조나 성숙도가 비슷한 나라끼리도 교역이 활발하다. 폴 크루그먼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간 경쟁은 실체가 모호한 개념이다. 중국의 추격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의 여건 변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편시켜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경제특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개방을 통한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 육성

지난 7월 14일 통과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경제특구 내 유치대상 업종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7장 보칙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전략 시안」에 나타난 기본방향이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특구의 대상업종이 서비스업, 특히 타산업과 연관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진다. 물론 정부의 시안은 「고도기술수반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제조업도 경제특구내 입지가 가능하나 공해산업을 배제하고 있고 고도기술수반산업 중에도 디지털 콘텐츠산업, 연구개발 기능, 소프트웨어산업 등 많은 분야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서비스업 위주라는 기본방향의 변화는 없다. 즉 전통제조업의 입주가능성은 낮으며 첨단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해산업이거나 큰 면적을 차지하는 양산형 제조업은 경제특구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의 표현에 의하면 ‘경제특구 추진 배경은 국내 서비스업이 개방이 거의 안되어 과보호체제에 머무르고 있어 경쟁력이 약하므로 제한된 지역에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내 서비스업의 발전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한적인 지역에 개방을 하는 이유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전면적 개방이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특구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원래 취지보다 후퇴한 내용이 많고 노동계를 비롯한 반발이 거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당국자의 염려는 근거있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자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경제특구 조성이 필요한 이유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과거의 우리 경제는 취약한 국내 제조업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제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에 나섰고 이러한 전략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시장규모가 작은 저개발국에서 보호 일변도의 정책은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지만 시장구조를 독과점으로 만들어 기업이 지대추구행위에 몰두하도록 하므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전후에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던 나라 중 성공한 예가 없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정책을 펴서 기업이 적어도 외국에서는 경쟁의 압력에 직면하도록 하였다. 기업이 지대행위에만 몰두하지 않고 경쟁력 향상에도 노력할 유인이 작동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의반 타의반 점진적으로 제조업 시장을 개방해 왔고 WTO 체제의 출범으로 제조업은 사실상 완전 개방되어 국제시장의 경쟁체제에 노출되어 있다.

향후의 발전 방향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선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고 경제구조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조업을 넘어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기업과 투자의 유치로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물론 이러한 방향이 제조업의 포기나 경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성장은 제조업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생산성 상승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가격의 하락이 용이하다. 서비스업은 주요 생산 요소가 인력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의 속도가 느리고 수요가 소득 탄력적인 업종이 많아 제조업에 비해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

성 향상은 역설적으로 제조업의 상대적 비중을 축소시키고 서비스업의 비중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서비스업의 발전이 제조업을 견인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서비스업이 생산요소(input)로 제조업의 산물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서비스업의 많은 업종은 제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개발, 정보서비스, 법률자문, 마케팅 컨설팅, 금융, 유통·물류 등 생산자서비스<sup>1)</sup>업은 제조업의 생산요소로서 제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 기업이라 할지라도 통계상의 분류야 어떻든 본사기능, 업무기능, 연구개발 기능은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노동집약적인 가공산업 위주의 경제에선 생산자 서비스업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지식집약적 제조업이 중요한 경제에선 서비스업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리고 경제성장 초기의 주력 산업인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고용효과가 크지만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서비스업의 발전은 기술집약적 제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충당하지 못하는 인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서비스업을 비교역재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국가간 경제적 경계가 약화됨에 따라 서비스업도 교역재의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하였고 시방개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에서도 서비스업의 개방이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인 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정부당국자가 염려한 바와 같이 이해집단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떠나서도, 외국의 서비스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국토의 제한적인 지역에 국한하여 개방을 시도하는 점진적인 방법이 전면적인 개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서비스업의 개방은 규제해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다소 맥락은 다르지만 문민정부시절의 금융분야의 규제해제가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도 있다.

1) 연구자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

## II. 경제특구 계획의 추진경과

###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 추진 경과

경제특구조성계획의 모태인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2.1.14. :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 발표
  - 대통령의 기본구상 발표로 청와대에서 추진 방침이 확정되고 재정경제부 주도로 건교부와 용역기관의 협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공이 시작되었으나 기본적인 구상은 이미 그 이전부터 연구 및 논의되어 왔음. 다만 이전의 논의는 개념적인 면이 많았으며 개발계획도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음.
  - 대통령의 기본구상 발표를 계기로 경제특구 후보지역 및 개발가능 검토 등 개발계획이 큰 틀 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업무기능위주로 개발할 지역의 선정이 주요 이슈였음.
  
- 2002.3. :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실현」 발전기획단 구성
  - 2002년 말까지 활동하는 비상설 협의체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실현」 발전기획단이 구성되었음.
  
- 2002.4.4. : 기본계획확정(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
  -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우수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발전시킨다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음. 이때 보고된 기본계획을 골자는 최종시안으로 연결됨.
  
- 2002.4.26. :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실현」 실무작업단 구성
  - 정부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로 이루어진 실무작업반이 구성되



어 부처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진행됨. 이후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확정된 내용은 해당 부서의 이름으로 순차적으로 발표되었음.

- 2002.7.24. :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세부실행계획 확정
- 2002.7.29. :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실현」 방안(정부시안) 발표
  - 정부의 시안이 확정 발표되었으며 이 안은 4월에 발표된 기본계획과 유사하나 부처간의 협의에 따라 당초 안에 비해 후퇴한 내용도 있고, 시안의 각종개발계획은 대부분 국가사업 또는 지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계획을 취합한 것임.
- 2002.8.21. :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공고
- 2002.9.13.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모색 공청회
- 2002.11.1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국회본회의 의결

## 2. 경제특구법의 입법과정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무려 세 번에 걸쳐 수정되는 우여곡절 끝에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우선 11월 6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제특별구역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하였고 지정기준 중 「국제공항·국제항만 등」을 「교통」으로 수정하여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구역의 경제자유구역을 간소한 개발계획을 기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경제특구 지정 기준완화는 내륙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지역이기주의라는 여론의 지적과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 밖에 재경위는 노동조건 악화를 우려하여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대할 수 있는 파견근로 업종을 “전문업종”으로 한정하였고 시·도지사의 경제특구 지정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인 재경부장관이 필요시 시·도지사의 동의와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행령 제정 등 시행 준비작업 등을 위해 2003. 7. 1부터 시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하였다.

지엽적인 수정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은 2002. 11. 8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반발과 언론의 이견 등으로 인해 상정이 보류되었다. 언론에서는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특례 인정을 반대하는 노동계는 지정기준 완화에 따른 특례의 전국적인 확산을 우려하여 반발하였다. 이에 국회는 언론의 지적을 받아들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준을 정부제출 원안으로 수정하고 11. 14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III.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내용

#### 1. 지정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제4조).

#### 2. 기업 및 노동 관계 규정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대상업종 및 파견기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제17조).

#### 3. 행정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20조).

#### 4.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외국학교법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 5.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약국 개설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6.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설치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고, 이를 보좌하는 실무기구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 7. 시·도지사 소관의 전담 행정기구 설치

경제자유구역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관의 전담 행정기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제27조).

## 8. 재정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동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

## 9.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립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 10.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1. 전담 행정기구 설치

시·도지사가 특구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담 행정기구 설치하고 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

## IV. 경제특구와 관련된 쟁점들

경제특구의 성공가능성 및 필요성 그리고 부작용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쟁점 중의 몇 가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경제특구제도의 전국적 적용 여부

일부에서는 경제특구가 추구하는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의 안이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의 의도보다 희석된 것은 사실이다. 국가경쟁력과 경제적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부서도 있지만 관련 이해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부서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다원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국의 경제특구화 주장은 타당성이 있기도 하지만 가능한 것과 바람직한 것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는 서비스업의 개방을 의미하므로 경쟁의 압력에 직면하는 집단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개방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지역의 확장은 이에 비례하여 반발을 확대시킬 것이므로 전면적인 개방은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 경제특구라는 용어가 특정지역에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전국적 시행이 가능하면 굳이 경제특구라는 용어도 필요없을 것이다.

경제특구는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생활여건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해제와 지원을 하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관련 규제를 해제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재원부담문제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국내기업과의 차별문제도 커지고 비용편익 측면에서 세수의 증감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다른 예를 들면 경제특구 내에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을 철폐하였는데 이런 제도의 전국적 시행은 정서적, 문화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들은 국내인들과 어울려 살기를 선호하므로 특정지역을 외국인을 위한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계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하지만 경제특구는 외국인 친화적인 곳이지 외국인 전용지역이 아니다.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의 다수는 한국인일 것이므로 이러한 걱정은 기우라고 해야 한다.

## 2. 경제특구예상지역의 적정성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신도시 등을 돌아보고 서울과 떨어져 있고 기반시설도 없는 황무지에 투자하거나 살고 싶어 할 외국인은 없을 것이라든 지적도 있었다. 사실 공해와 교통혼잡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즈니스투자의 최적격지는 서울이다. 비즈니스기능은 집적의 경제가 중요하고 제조업과는 달리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높은 지가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대도시가 적격이다. 하지만 대도시의 기존도심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시는 건물의 내구성 때문에 한 번 완성되면 그 기능이 쉽게 바뀌질 않는다. 때문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포화된 상태인 곳에 차별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고 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미 들어와 있는 회사에 업종과 법을 따져가며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복잡하고 실효도 없으며, 물류단지나 레저시설, 외국인 학교를 만들 땅도 없으며 공해와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추기도 힘들다.

따라서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의 미개발지 또는 저밀도지역이 경제특구 대상지역으로 적합하다. 비록 현재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더라도 기존의 고밀도 지역을 정비하여 경제특구로 조성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 계획적으로 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 3. 노동관계법의 특례 조항

경제자유구역법의 제17조 제4항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휴일 및 생리휴가를 무

급화하고 월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조항이지만 노동계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 큰 의미는 없는 조항이다. 우선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경제특구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려면 비교적 일찍 여건 조성이 가능한 송도신도시 지역이 빨라야 2004년이다. 김포매립지는 2009년에나 가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 때쯤이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 경제특구 안팎의 차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임금삼각효과를 걱정하지만 경제특구는 제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서비스 분야의 신규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외국인 비즈니스 업체에서는 당연히 주5일제를 실시할 거고, 서비스업은 근무 강도와 근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휴일의 무급화 여부가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반영한 노동력의 수요공급이 급여를 결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월차를 주고 연봉을 적게 주나 월차를 안 주고 연봉을 많이 주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다. 제조업은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고, 연장근무수당이 정규임금보다 높다. 따라서 주5일제 실시여부, 월차존속여부, 휴일과 생리휴가의 무급화 문제가 임금에 가시적인 영향을 받는다.<sup>2)</sup> 경제특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비즈니스 기능의 도입이 힘든 지역에선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제조업위주의 경제특구가 조성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노동계가 반발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파견근로제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은 파견근로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당초 업종 제한 없이 무기한 파견근로를 가능케 했지만, 수정안은 파견근로를 전문직에 한하고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사실상 현행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 4.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

일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이 느슨하여 외국인 지분이 일부 있는 국내기업들이 경제특구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특구가 국내기업들의 규제회피 수단이 될 것을 염려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분이 10% 이상이면 되는데 웬만한 국내상장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은 10%를 넘는다는 것이다.

---

2) 물론 이것도 기존 계약 조건에 의한 단기적인 영향일 뿐 장기적으로는 노사 양측 모두 급여와 노동일을 고려하여 협상에 나설 것이므로 노동일 관련 규정이 임금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않을 것이다.

국내기업과의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상반된 주장인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이상 소유하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지분의 취득과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한하여 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외국인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포트폴리오(portfolio)투자와는 구분된다. 즉 주식시장의 외국인지분율이 외국인 투자기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 5. 난개발 가능성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그리고 제11조에 의해 무려 34개 법조항의 의제처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즉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에 적시된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등을 비롯하여 34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일부에서는 34개 조항의 면제로 파악하고 난개발과 국토의 파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면제규정이 아니라 의제처리규정이며 제11조 제2항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자 또는 해당지자체가 관련 조항의 협의를 다 거쳐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취지대로 인천, 부산, 광양의 5개 지역에 제한적으로 조성된다면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포매립지의 경우 환경단체의 우려와는 달리 현장은 보존의 가치가 별로 없는 황무지이며 오히려 주변이 환경유해 시설로 둘러 쌓여있다. 개발이 주변 환경유해 시설의 정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 V. 인천지역의 경제특구 조성계획(안)

인천지역에서의 경제특구는 크게 3개 지역으로서, 송도신도시, 영종지역, 김포매립지가 위

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중앙정부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거론되기 이전부터 구체적인 개발계획 또는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추진되어 왔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송도신도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진행지역 535만평 이외에 장래확장지역을 포함하면 약 1,286만평에 이르고, 영종지역은 공항지역 1,700만평과 시가화조정구역 570만평 그리고 용유·무의 관광단지 213만평 등과 약 1,800만평의 계획미수립지역이 있다. 김포매립지는 542만평 규모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은 개발논의가 진행되었다. 다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정리하였으나, 여건변화와 지역간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

### 1. 영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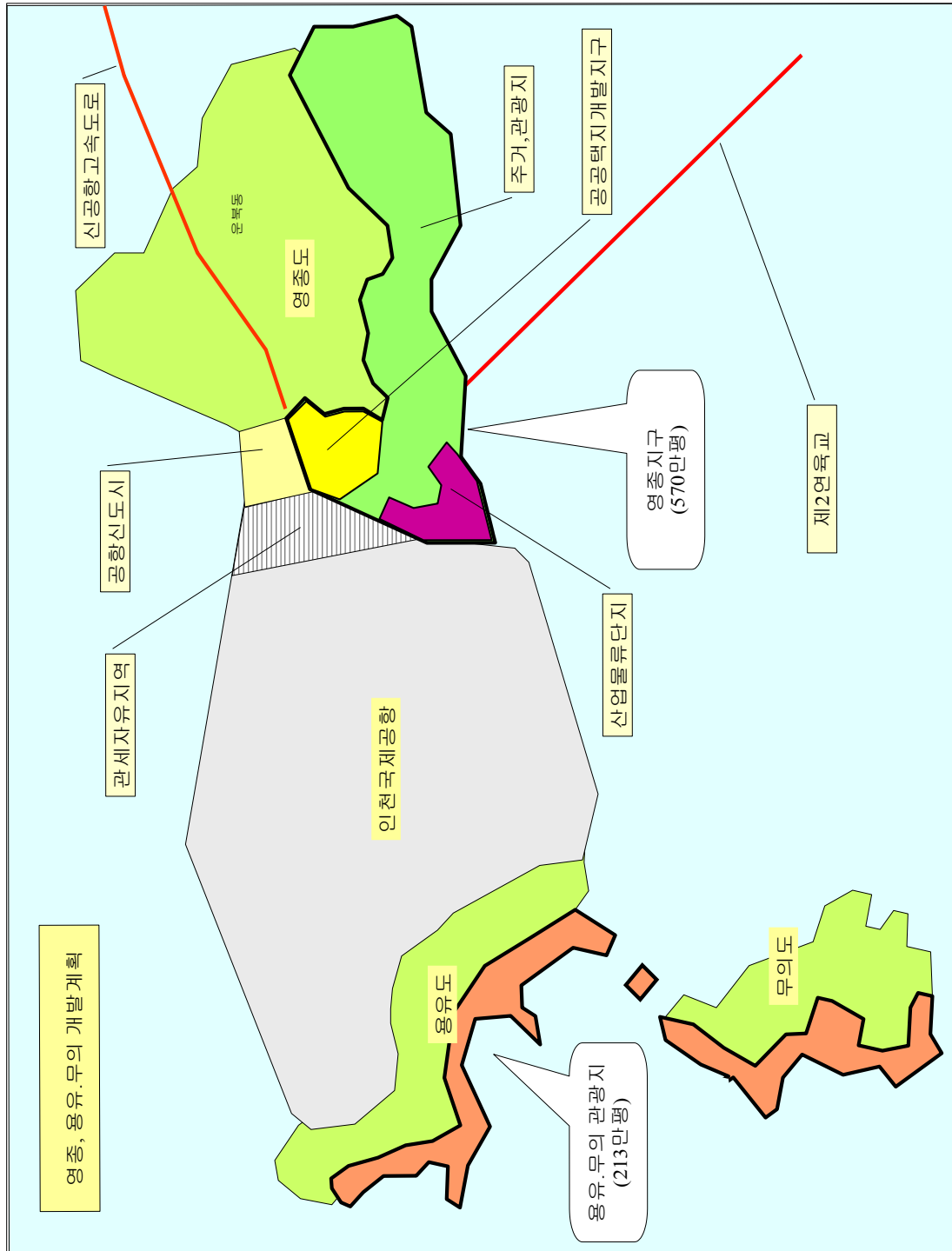
영종지역은 현행 개발계획에 따라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레저단지를 기본방향으로 개발된다. 공항 2단계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공항 동북 측 유보지에 관세자유지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산업 및 물류 단지가 공항시설 확장 및 관세자유지역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공항 인접부에 배치된다. 기존 공항신도시의 남쪽에 주거지역이 개발된다. 용유·무의도 지역은 국제적인 레저 단지로 조성된다.

<참고> 인천지역 경제특구 예정지





<참고> 영종지역 개발계획



우리 나라의 경제특별구 평가 및 발전전략

□ 영종지역 주요기능

구 분	개발기본구상	면 적	목표년도	주요기능
신공항 예정지	소 계	1,700만평		
	국제업무단지 (IBC-I)	15만평	2005년	상업시설, 업무시설, 호텔 및 부대시설
	국제업무단지 (IBC-II)	80만평	2010년	상업시설, 호텔, 휴양시설 및 부대시설
	관세자유지역	60만평	2005년	물류창고, 유통센터, 항공기 부품센터 등
	공항신도시	83만평	조성완료	계획인구 2만명 수용 신도시개발
	공항유희지개발	109만평	2006년	골프장 76홀, 숙박 및 부대시설
	신공항부지	1,353만평	2단계 2008년	공항 활주로, 계류장, 및 부대시설
영종지역 개발사업지 (1~18구역)	소 계	570만평		
	시가화조정구역 1~16구역	471만평	2011년	· 주거, 상업, 물류, 관광용지 (개발사업구역 1~16구역)
	영종택지개발 사업예정지구	74만평	2008년	· 국제업무, 주거, 상업용지 (개발사업구역 17구역)
	시가지조성 사업지구	25만평	2011년	· 첨단산업, 물류용지 (개발사업구역 18구역)
구획정리 사업지구	운서·운남 구획정리사업지구	24만평	사업 추진중	· 주거 및 부대시설
용유·무의	총 계	213만평		
	엘리스랜드 : 위락형리조트	115만평	2007년	· 매직피아 : 카지노, 고급쇼핑 · 하나개밸리 : 해변휴양지 · 엔젤타운 : 가족형 테마휴양
	마린월드 : 복합해변 친수공간	53만평	2012년	· 머드파크 : 갯벌공원 지정 · 문화테마파크 · 마린파크 : 경정장, 상가
	드래곤시티 : 국제적리조트타운	45만평	2012년	· 주거, 쇼핑, 마리나 · 워터파크, 식당가 정비 · 선녀마을 : 실버타운 · 용유플라자 : 복합상업공간
개발계획 미수 립지역	유보지	1,812만평	-	· 자연녹지 · 장래 지속적· 단계적 개발계획수립

공항확장과 관세자유지역 조성 사업은 공항공사와 정부가 주도하여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여타지역의 개발은 인천시의 소관이다. 공항신도시 남측 택지조성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착수되었다. 하지만 산업·물류단지와 기존취락지역의 개발은 아직 확정된 개발 일정이 없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재원조달계획 미비로 인해 원점에서 개발방안을 다시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영종·용유지역은 김포매립지나 송도신도시와 달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공항공사관할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유지가 대부분인데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가 상승한 상태여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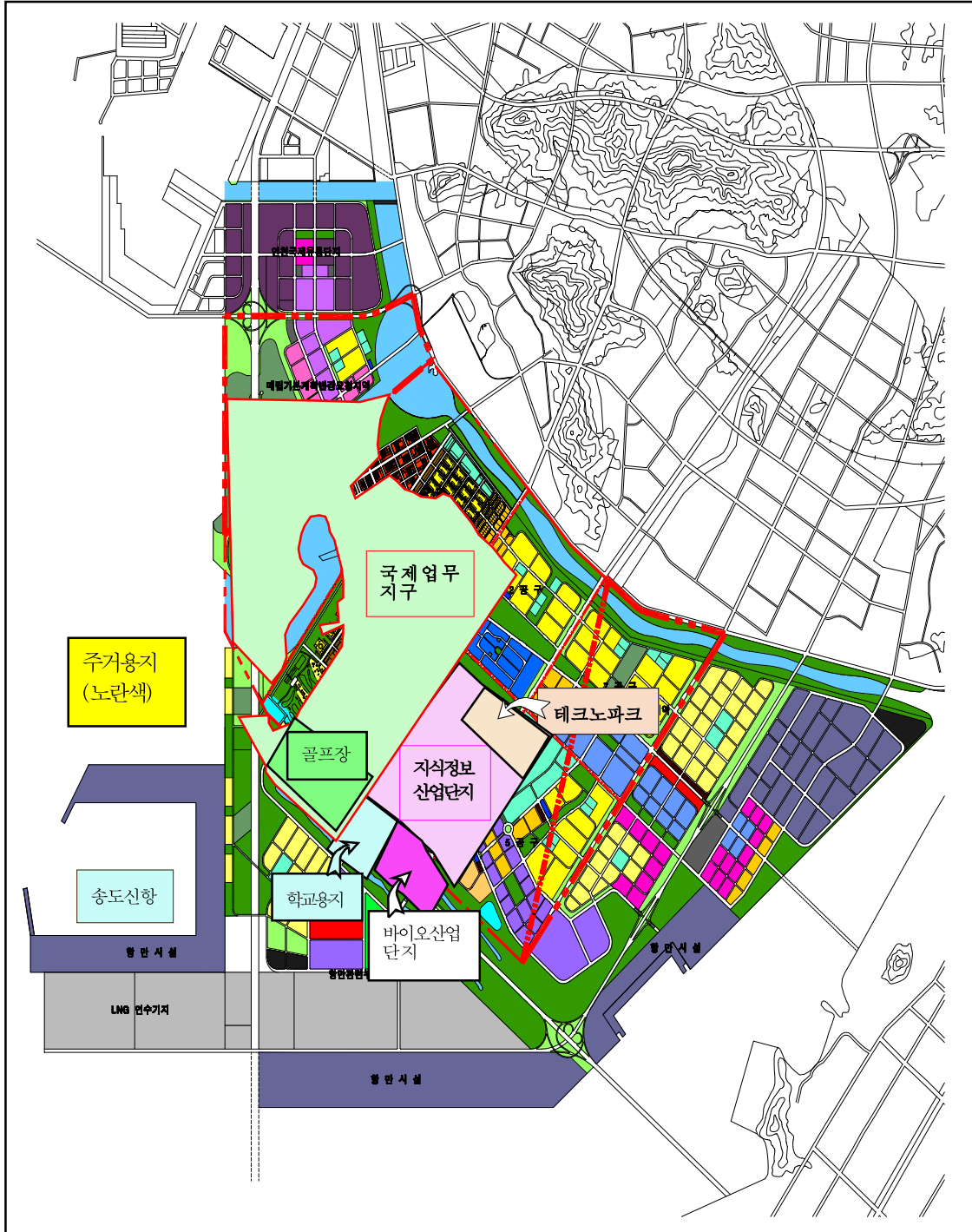
## 2. 송도신도시

송도신도시는 국제업무와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된다. 2·4공구는 지식 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송도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일부 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2003년 중에 기반시설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2공구 북측의 공동주택단지는 곧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4공구 남단에 에이즈백신 개발 업체의 선두주자인 백신젠(Vaxgen)사가 연구시설과 백신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시립 인천대학교도 4공구 지역으로 이전해 올 예정이다.

1·3공구는 국제업무단지로 개발된다. 이 지역은 전국의 경제특구 지정 예상 지역 중에서 가장 국제비즈니스기능의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현재 1공구의 매립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3공구는 호안축조 및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 1·3공구의 대부분은 미국의 Gale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예정인데 인천시는 토지를 10억불에 매도하고 기반 시설을 조성하며 Gale사는 인천시와 협의한 개발계획에 의해 해당지역을 2013년까지 약 117억불을 투자해 개발할 예정이다. 잠정적인 개발계획을 개발계획도 아래에 소개하였다.

송도신도시 지역은 현재로서는 공항 및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제2연륙교가 완공되고 제2연륙교와 제2경인 및 제3경인고속도로의 연결이 완성되면 유력한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공항 - 제2연륙교 - 제3경인고속도로의 연결망은 경기지역의 공항접근성을 강화하고 송도신도시의 지식기반산업단지와 경기남부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제2연륙교는 민자사업자인 영국의 AMEC사와 건교부의 실시협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참고> 송도신도시 개발계획



송도신도시 주요기능

개발기본구상	위 치	면 적	목표년도	주요기능
국제 비즈니스센터	1,3공구	167만평	2013년	· 국제업무지구 · 국제금융지구 · 국제전시교류단지
송도 지식 정보산업단지	2,4공구	80만평	2011년	· 테크노밸리 · 테크노파크
첨단 BIO 단지	2,4공구	10만평	2010년	· 생명공학 연구개발시설 · AIDS백신 생산시설 · R&D 센터
주거단지	2공구 외	100만평 (2공구 : 54만평)	2공구 분양중	· 단독주택단지 · 공동주택단지 · 주상복합단지
국제비즈니스 센터 확장	5,6,7공구	277만평	2020년	· 세부실시계획수립중
장래확장지역	8,9,10,11공구	약600만평	2030년 ~ 2040년	· 국제물류유통단지 · 송도신항만 · 주거, 업무 등 지원기능

**■ 송도국제비즈니스센터조성계획 개요**
 내용

- The Gale Company와 포스코건설의 합작법인 (지분율 81%:19%)이 송도정보화신도시의 1·3공구 + 2공구 일부 토지를 2단계에 걸쳐 매입하여 인천시와 합의한 Master Plan에 따라 국제비즈니스지역으로 개발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 2002. 3 ~ 2013. 4
  - Phase I : 2002. 3 ~ 2010. 7
  - Phase II : 2010. 7 ~ 2013. 4

단계별 개발계획

- Phase I : 국제무역센터 Complex(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국제무역빌딩(60층)), 오피스빌딩(60동), 호텔(4동), 백화점 및 쇼핑몰, 고급명품관거리, 주거단지(약 8,000세대), 외국인 학교, 골프장, 공공용청사, 학교, 도로 등
- Phase II : 주거단지(약 6,000세대), 고층주거단지(약1,200세대), 사립외국인학교, 오피스빌딩(9동), 컨벤션확장, 오피스빌딩, 공립학교, 도로 등

개발면적 : 167만평 (송도정보화신도시 매립1,3공구 + 2공구일부)

구분	총면적	Gale社	인천시
1단계	116만평	49만평	43만평
2단계	51만평	39만평	12만평
합계	167만평	88만평	55만평

투자규모: 135억불

구분	Gale社	인천시	계
1단계	\$80.0억	\$5.6억	\$85.6억
2단계	\$37.5억	\$2.2억	\$39.6억
합계	\$117.5억	\$7.8억	\$125.3억

※ 개발자부담: 127억불(=개발자 개발투자비 + 개발자토지매입비)

개발자 의무

- 주거단지와 컨벤션센터, 소매상가, 중앙공원, 호텔2개, 연면적 28,000평이상의 오피스건물(WTC 포함)의 동시 개발. 단, 지하철의 동시 착공 조건
- 중앙공원 개발후 인천시에 1불에 기증 (개발자의 제안)
- Master Plan에 따른 토지 사용
- 인천시의 관리·감독권(Master Plan 준수여부확인) 인정
- 인천시에 보고서제출 및 회의 참석 의무
- 총투자금액의 51% 이상은 해외에서 조달

## □ 인천시 의무

- 기반시설 건설
  - 1단계 기반시설: 2005년
  - 2단계 기반시설: 제2연륙교 개통 후 4년반 이내 또는 2013년 7월
- 공공시설 제공:
  - 항만인접지역준설, 공립학교, 경찰서, 소방서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개발속도에 맞추어 인천시가 연관부처와 협의하여 제공
- Master Plan의 도시계획 반영
- 본 계획을 수용하기 위한 환경조성노력
  - 지하철 연장공사
  - 제2연륙교 완공
  -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및 개발 및 투자관련 규제 해제
  - 카지노 영업허가

상기 개발계획은 2002년 3월 인천시와 Gale사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며 현재 수정안을 놓고 인천시와 Gale사가 협의중이다.

## 3. 김포매립지

김포매립지는 위락 및 국제금융단지로 조성된다. 김포매립지(487만평, 농업기반공사 370만평, 국유지 117만평)와 인접한 청라매립지(30만평, 인천시 소유) 및 사유지(25만평)를 함께 개발하되, 한국토지공사가 공영개발하고 국제금융시설에 대하여는 외자(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김포매립지는 공항과 서울에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현 계획에 의하면 저밀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국제금융시설과 외국인 주거단지를 중앙에 배치하고 레저 시설(골프장, 경마관련시설, 테마파크 등)을 주거단지 주변에 배치하여 주변협오시설(쓰레기 매립장, 화력발전소 등)과 차단할 계획이며, 주거·상업·공공시설은 주변환경과 경관이 양호하고 기존 시가지 접근성이 좋은 지구 동측에 저밀도로 개발하여 김포매립지 전체의 수용인구는 8.9만명이다.

공항고속도로 연접지역과 심곡천 남측지역에는 농림부 주관하에 환경친화적인 화훼단지

를 조성하고, 유보지는 국제업무도시 기능이 활성화될 때까지 생활 스포츠 용지로 활용하고 장래 외국 대학원 분교, 외국 종합의료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김포매립지는 농업기반공사가 동아건설로부터 6,355억원에 매입한 370만평의 토지가 있다. 2001년말 기준 농업기반공사의 김포매립지 관련 차입금은 7,845억원에 달한다. 당초의 매입가는 공시지가의 2/3선인 평당 17만원에 불과했지만 차입과 채권발행으로 매입대금을 조달하였고 매입토지가 무수익성 자산이기 때문에 연간 600억원 선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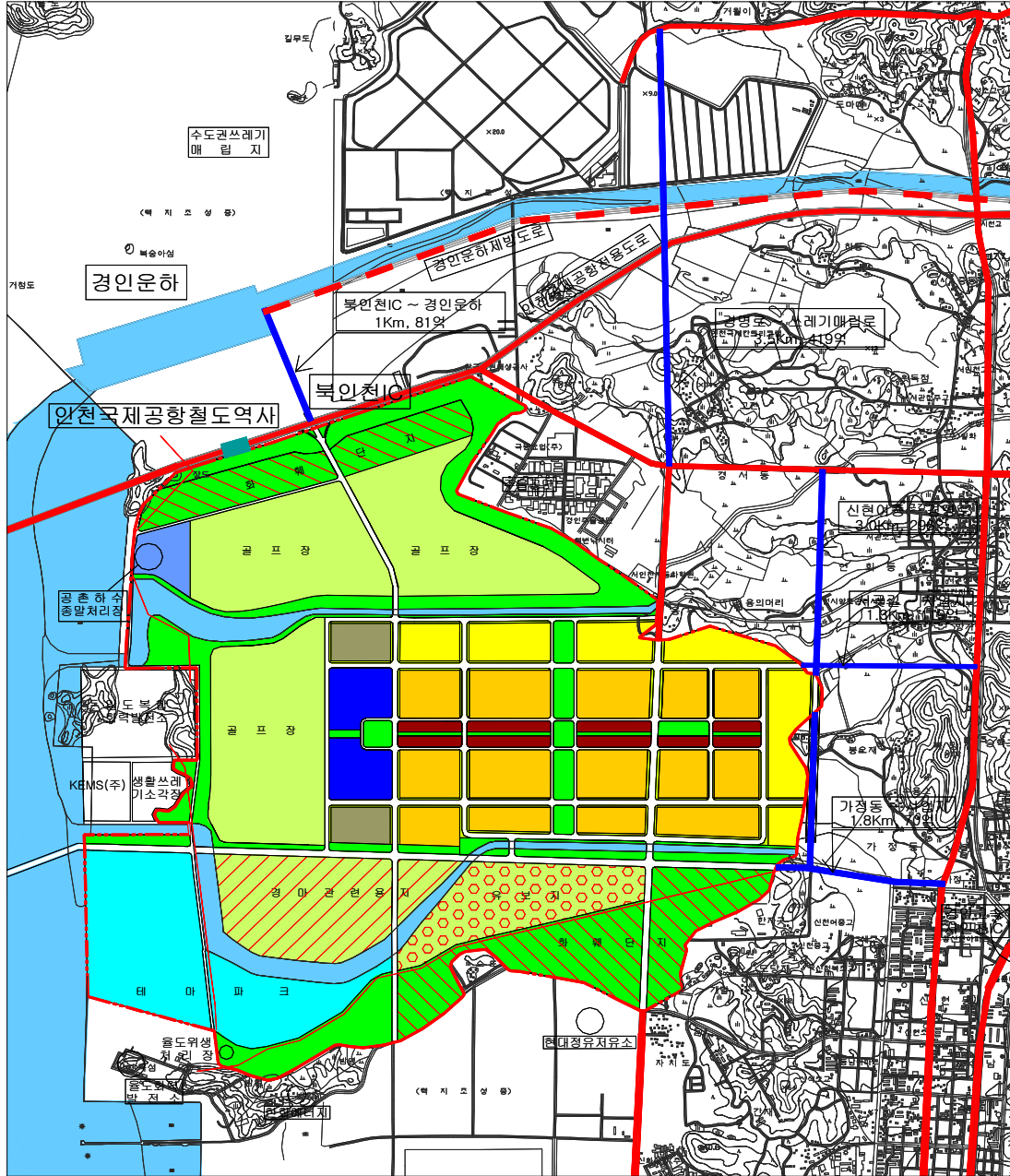
김포매립지는 서울과 공항에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제업무 중심지로 유력하게 검토되었지만 송도신도시와의 중복투자 가능성 및 주변의 환경협오시설 때문에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저밀도 개발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저밀도 개발의 사업성이 낮고 화훼단지의 경제성도 그리 높은 평가를 받는 편이 아니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른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여의도와의 인접성을 들어 국제금융센터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지만 집적의 효과가 크고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는 금융기능의 속성을 고려하여 저밀도로 개발되는 김포매립지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자리잡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견해도 있다.

□ 김포매립지 주요기능

개발기본구상	면적	목표년도	주요기능
총계	542만평		
국제업무단지	13만평	2009년	· 국제업무타운건설
주거단지	105만평	2009년	· 단독주택 (36만평) · 외국인 주택단지 (10만평) · 공동주택 (53만평)
상업·업무지구	9만평	2009년	· 상업시설 등
스포츠·레저단지	227만평	2009년	· 경마관련용지 (32만평) · 테마파크 (43만평) · 골프장(95만평) · 화훼단지(57만평)
유보지	22만평	2009년	· 외국대학원 분교 · 외국인종합의료시설 등
공공시설	166만평	2009년	· 도로·하천 등



<참고> 김포 매립지 개발구상



국제금융	상업업무	공원
공동주택	골프장	하천
단독용지	화훼단지	경마관련용지
외국인주거	테마파크	공급처리시설

## VI. 경제특구가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인천경제의 변화추세

인천은 전통제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였으나 90년대 중반이후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 GDP대비 인천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은 1985년 4.4%에서 꾸준히 상승해 95년 5.0%로 정점을 이룬 후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IMF에 이은 대우사태로 지역 제조업이 크게 침체되면서 2000년에는 4.5%로 낮아졌다.

제조업의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는 1986년의 199.1에서 2000년에 99.8로 크게 하락하였다. 인천 서비스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고 인천 산업내 서비스업의 비중도 커졌으나 서비스업의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는 소폭 감소하였다.

<표> 지역경제의 전국대비 비중 및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

(단위 : %)

구분	1985	1987	1990	1992	1995	1997	2000
인구비중	3.78	3.96	4.42	4.72	5.18	5.27	5.37
GRDP	4.4(116.3)	4.7(118.9)	4.7(105.1)	4.7(98.9)	5.0(97.3)	4.8(90.8)	4.5(83.7)
제조업	7.5(199.1)	8.1(203.6)	7.3(165.9)	7.1(150.7)	7.9(152.8)	6.9(131.6)	5.4(99.8)
서비스업	3.2(84.6)	3.4(85)	3.5(79.5)	3.7(78.8)	3.7(71.9)	3.7(71.1)	4(75.3)
생산자 서비스업	2.7(72)	3.4(85.9)	3.4(78)	3.9(82.8)	3.9(76.1)	3.7(70.3)	4.1(75.9)

주 1) GRDP전국대비 비중 = (지역총생산/GDP)

2) 괄호안은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로서 (전국대비 비중)/(인구점유도) 즉, 1인당 GRDP의 전국 평균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통계DB(KOSIS) (1995년 기준년가격, 부가가치기준)

&lt;표&gt; 인천의 산업구조

구분	1985	1987	1990	1992	1995	1997	2000
1차산업	3.3	2.1	1.0	0.9	1.5	1.3	1.5
2차산업	61.6	64.2	62.1	59.0	60.4	58.7	54.5
제조업	(48.6)	(55.1)	(47.5)	(44.7)	(46.6)	(44.6)	(43.8)
3차산업(서비스업)	35.1	33.8	36.9	40.1	38.1	40.0	44.0
생산자서비스	(7.4)	(8.9)	(10.5)	(13.2)	(12.9)	(13.1)	(14.6)

자료 : 통계청, 통계DB(KOSIS) (1995년 기준년가격, 부가가치기준)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되어 지역내 총생산의 전국대비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모든 광역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sup>3)</sup>. 그 배경으로는 광역시에서 道로 제조업이 이전하거나 道에서 제조업의 성장률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성장세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 충북, 충남에서 두드러져 전체적인 국토균형개발 추세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제조업의 비중 축소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다. 경제전체의 성장과정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제조업은 토지집약적인 특성상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입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조업은 저지가를 선호하더라도 시장 및 인력에의 접근성, 각종인프라, 관련업체의 집적이익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 입지할 유인이 많다. 물론 예외도 있어 수출입 관련 물류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지방이라도 임해지역/항만도시를 선호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대도시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위주로, 道 지역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 지역은 축소되는 제조업을 대체할 서비스업의 성장여부가 중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은 산업내 서비스업의 비중도 커졌으나 서비스업의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는 소폭 감소하였다. 즉 제조업의 위축을 대체할 서

3) 기업의 소유자와 종업원이 반드시 기업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내 총생산이 주민의 소득을 바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스업의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다.

## 2. 경제특구가 인천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천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전통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체가 많아 산업구조가 취약하다. 서비스업의 발전 속도도 빠르지 않은 편이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서울의 비중이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해 금융·보험·부동산·법률·컨설팅 등의 서울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인천의 생산자서비스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1인당 생산자서비스 생산액의 전국평균대비 비율은 1989년 87.9%로 정점을 기록한 후 1997년 70.3%까지 낮아졌다가 2000년 75.3%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타 시도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이나 법률·회계·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기업의 본사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지향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서울에 인접한 인천은 인구규모에 비해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서울의 근접성은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서울의 발달된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다. 그러나, 집적효과가 높은 생산자서비스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인천의 관련산업 발달이 부진한 부작용도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을 제외하고서도 타 광역시에 비해 인천의 지역금융시장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경제특구는 물류 비즈니스 등의 서비스업을 유치대상으로 하므로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인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위주로의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신도시내에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은 경제특구계획 입안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계획이지만 경제특구로 인해 투자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이므로 제조업 내에서도 전통제조업 위주의 취약성이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 3. 경제특구가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

인천발전연구원은 2002년 6월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타시도와 비교하여 인천의 기업환경을 비교하게 한 결과 20개 항목 중 주거환경과 교육여건 두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주 나타난 바 있다.

인천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공단 및 공업지역이 형성된 후 서울의 광역화로 인해 인구유입이 증가하여 공장지역과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달리 뚜렷한 도심이 존재하지 않고 서울과 먼 구도심 지역의 구심력이 약해져 공장의 이전도 서울에 비하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회색 빛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고 주거환경이 미흡한 편이다. 주거환경의 미흡은 교육여건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킨다.

경제특구 개발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인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의 개선은 주거환경에 민감한 우수인력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과 고부가치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번욱, 「제조업 구조변화 및 배경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2  
 박재룡 외,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2. 9.  
 재정경제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2002. 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2. 11.  
 이상철 외, 「인천지역 기업환경 실태조사」, 인천발전연구원, 2002  
 추기능, 「인천경제의 발전과 시도간 비교」, 인천발전연구원, 2002